



청정개발 및 기후에 관한 아태 파트너십

헌장

제 1 차 시드니 장관 회의에서 (2006 년 1 월 11-13 일) 채택

제 2 차 뉴델리 장관 회의에서 (2007 년 10 월 14-15 일) 개정

호주, 중국, 인도, 일본, 대한민국, 미국 정부(이하 “회원국”)를 대표하는

우리는 2006 년 1 월 12 일 호주 시드니에서 만나:

본 헌장의 일부인 2005 년 7 월 28 일(부속서I)의 새로운 청정개발 및 기후에

관한 아태 파트너십을 위한 우리의 비전 선언문의 지침에 따라,

파트너십의 목적이 유엔기후변화협약 및 그 밖의 다른 관련 국제규범의

원칙과 일치하고, 교토의정서를 보완하되 대체하지 않음을 명심하며,

청정개발 및 기후에 관한 아태파트너십(이하 “파트너십”)을 출범하고

파트너십을 위한 이하의 법적 구속력이 없는 헌장을 제시하기로 결정한다.

본 파트너십은 우리의 개발, 에너지, 환경, 기후변화 목적달성을 위해



회원국간의 신속하고, 건설적이며, 생산적인 국제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체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1. 공유비전(Shared Vision)

1.1 각 회원국은 개발 및 빈곤퇴치가 전 세계적으로 시급하고 우선적인 목표임을 인식하면서 청정개발 및 기후변화 목적을 자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모였다. 기존의 양자 및 다자적 이니셔티브의 기초를 설립하며, 각 회원국은 우리의 증가하는 에너지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대기오염, 에너지안보, 온실가스를 포함해 국가여건에 따라 연관된 과제들을 달성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각 회원국은 파트너십의 공유 비전을 달성하는 데에 있어서 국가적 노력이 또한 중요함을 인식한다.

2. 목적(Purpose)

2.1 본 파트너십의 목적은:

2.1.1 실제적인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회원국간에 기존 및 새로운, 그리고 장기적으로 비용·효율적이고, 청정하고,



보다 효과적인 기술과 방식의 개발, 보급, 확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자발적이고 법적 구속력없는 기본체제를 마련하고;

2.1.2 그러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조성을 도모 및 창출하고;

2.1.3 각 회원국의 오염저감, 에너지안보, 기후변화 목적 달성을 촉진하고;

2.1.4 청정개발 목표의 맥락 안에서, 각자의 국가개발 및 에너지전략의 개발 및 이행에 있어서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하여, 연관개발, 에너지, 환경, 기후변화 이슈 대응과 관련한 각 회원국의 정책적 접근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

3. 기능(Functions)

3.1 본 파트너십을 통해 각 회원국은 다음 사항에 협조한다.

3.1.1 청정개발의 맥락 안에서, 상호 이해관계가 있는 그 밖의 다른 분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책적 접근방안에서의 모든 공백 및 중복을 포함하여, 연관개발, 에너지, 환경, 기후변화 이슈 대응과 관련한 각 회원국의 정책적 접근방안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3.1.2 국가적 청정개발 전략 및 온실가스 집약도 저감을 위한 노력의 개발, 이행에 관한 경험을 공유하고 정보를 교환한다.



3.1.3. 각 회원국의 우선사항에 따라서, 기존 및 새로운, 그리고 장기적으로 비용·효율적이고, 청정하고, 보다 효과적이며, 전환적인 기술 및 관행의 개발, 보급, 확산, 이전을 위한 여건조성의 도모 및 조성에 대한 장애물을 파악하고 평가하여 이에 대응한다.

3.1.4 각 회원국의 우선사항에 따라서, 기존 및 새로운, 그리고 장기적으로 비용·효율적이고, 청정하고, 보다 효과적이며, 전환적인 기술과 방식의 개발, 보급, 확산, 이전을 위한 회원국 간의 양자 및 다자간 협력활동을 파악하고 이행한다.

3.1.5 기존의 양자 및 다자적 이니셔티브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각 회원국의 기후관련 기술에 대한 정보공유를 도모한다.

3.1.6 인적, 제도적 역량수립요소를, 적절한 경우, 협력적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동에 통합한다.

3.1.7 파트너십의 협력활동의 일부로서 민간부문을 참여시키고 아울러, 적절한 경우, 은행, 연구소, 그 밖의 관련 정부 및 정부간, 비정부기구도 참여시킨다.

3.1.8 회원국이 결정한 작업계획을 개발, 이행한다.



3.1.9 계획의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파트너십의 진전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3.2 각 회원국은 법, 규제, 정책에 따라, 그리고 회원국이 속한 적용 가능한 국제규범에 따라, 본 헌장에서 숙고된 활동들을 실행한다.

4. 조직(Organization)

4.1 본 파트너십의 이행 촉진을 위해 정책·이행위원회(Policy and Implementation Committee) 및 행정지원그룹(Administrative Support Group)이 구성될 것이다.

4.2 정책·이행위원회는 파트너십의 전반적인 체제, 정책, 절차를 감독하고, 협력의 진전사항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재정지원그룹에게 지침을 제공한다.

위원회는 파트너십의 협력활동의 이행을 관리하고,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아울러 적절한 경우 개발은행, 연구소, 관련 정부 및 정부간, 비정부간 기구의 대표들의 참여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위원회는, 회원국 내 여건조성의 마련 및 도모의 차원에서, 또한 관련 국가차원의 청정 개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회원국의 노력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활동들을 실행할 것이다. 위원회는 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과제 전담반과 하부



그룹을 조직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작업달성을 위해 회원국들이 필요하다고 결정할 때마다 만나서, 적절한 경우 정책이슈 또는 기술이슈 또는 두 가지 모두에 대해 의제 초점을 맞출 수도 있다. 정책·이행위원회의 결정은 위원회 회원국들의 총의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4.3 회원국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활동의 주요 조율자 역할을 하는 행정지원그룹이 담당 할 일은 (1) 파트너십 회의 개최, (2) 전화회의 및 워크숍 등의 특별활동 마련, (3) 파트너십의 활동에 관한 정보 조율 및 전달, (4) 파트너십에 관한 정보교환소 역할, (5) 정책·이행위원회가 승인한 핵심 기능을 위한 절차 및 책임사항 유지, (6) 정책·이행위원회가 지시하는 그 밖의 다른 임무 수행이다. 행정지원그룹의 기능은 사실상 행정적인 것으로, 정책·이행위원회가 특별히 지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실질적인 사항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4.4 정책·이행위원회는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다. 부속서II에 포함된 각 회원국은 정책·이행위원회 회의에 최대 3명까지의 대표를 지명할 수 있다.

4.5 정책·이행위원회는 재량에 따라 다른 전문가의 회의 참석을 허용할 수 있다.



4.6 미국정부가 초기에 파트너십의 행정지원그룹의 역할을 맡을 것이다. 이 제도는 2년 간격으로 검토될 것이며 정책·이행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각 회원국은 행정지원그룹을 위한 주요 접촉담당자의 역할을 할 행정 연락책을 지정할 것이다.

4.7 행정지원그룹은 요청에 따라 회원국이 고용하여 행정지원그룹에게 지원한 서비스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회원국이 다르게 결정하지 않는 한, 이들 인력은 이들 각자의 고용주로부터 급여를 받고, 고용주의 고용 조건에 귀속된다.

4.8 각 회원국은 각자의 파트너십 활동 참여에 대한 성격을 개별적으로 결정할 것이다.

5. 자원(Funding)

5.1 파트너십 참여는 자발성에 기초한다. 각 회원국은 해당 당사국의 법, 규제, 정책을 조건으로, 각자의 재량에 따라 재정, 인력, 그 밖의 다른 자원으로 파트너십에 기여할 수 있다. 본 헌장에 속고된 활동에서 야기된 모든 비용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해당 활동을 주도한 당사국이 부담한다.



6.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6.1 지적재산권 및 그로 인한 회원국의 협력활동으로 야기된 처리와 관련된 모든 사안은 해당 사안이 발생한 특정 맥락 안에서, 파트너십의 목적을 명심하여 사안별로 해결한다.

7. 개정(Amendments)

7.1 정책·이행위원회는 본 헌장 및 부속서II를 위원회의 회원국의 총의로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다.

8. 헌장 유효기간(Term of Charter)

8.1 본 헌장하의 협력은 2006 년 1 월 12 일로 발효된다. 모든 회원국은 90 일전 사전 서면통고로 회원국 자격을 종료할 수 있다.



부속서 1

청정개발 및 기후에 관한 아태 파트너십 비전성명

라오스 비엔티엔, 2005년 7월 28일

개발과 빈곤 근절은 국제적으로 시급하고 매우 중요한 목표이다.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는 가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에 대한 접근 증대의 필요성을 분명히 밝혔으며, 아울러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델리 선언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접근을 고려함에 있어 개발 의제의 중요성에 대해 합의하였다.

우리는 국가별로 각각 다른 부존자원, 지속가능개발 및 에너지전략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협력할 것이다. 기존의 양자간·다자간 구상의 기반에 근거하여, 우리는 앞으로도 에너지수요증가 문제 및 대기오염, 에너지 안보 및 온실가스집약도 등 관련 도전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UNFCCC)’ 원칙에 부합하도록 각국의 국가적 상황에 따라 보다 청정하고 효율적인 기술을 개발, 사용, 이전하고 개별국가의 오염감축, 에너지안보 및 기후변화 관련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해 개별적, 국가적 상황에 맞게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이 파트너십은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기존 및 새로운 비용·효과적인 청정기술 및 방식의 개발, 확산 및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해나가는데 협력을 해 나갈 것이다. 협력의 분야는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에너지 효율, 청정석탄, 통합가스화사업, 액화천연가스, 탄소포집 및 저장, 농촌에너지시스템, 첨단운송, 건물 건축 및 운영, 바이오에너지, 농업 및 임업, 수력, 풍력, 태양력, 기타 재생에너지 등.

이 파트너십은 경제발전을 증진하면서도 대기중의 온실가스집약도의 현저한 감소를 가능하게 하는 장기적인 변환에너지기술의 개발, 확산, 이행을 위해 공조해 나갈 것이다. 중·장기 협력의 분야는 아래 분야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수소, 나노테크놀로지, 첨단 바이오테크놀로지, 차세대핵분열, 융합에너지.

이 파트너십은 국가단위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에너지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해 나가는데 있어서의 경험을 공유하게 될 것이며, 우리경제의 온실가스 집약도를 감소하는 기회를 모색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구속력을 갖지 않은 합의를 형성해 나갈 것이며, 공유된 비전의 구성요소들과 이행방법, 수단에 대해서는 향후 더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우리는 기구 및 재정체제 문제, 동 파트너십에 관심있는 국가와 우리와 비슷한 입장을 가진 국가의 가입 등을 포함하여 파트너십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문제를 고려할 예정이다.

파트너십은 또한 협력노력 강화를 위해 참가국들이 인적·제도적 능력을 형성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민간분야 참여를 위해 기회를 모색할 것이다. 우리는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기적으로 파트너십을 검토할 것이다.



이 파트너십은 우리의 유엔기후변화협약 하에서의 우리의 노력에 부합하고
이에 기여할 것이며, 교토의정서를 보완하나 대체하지는 않을 것이다.



부속서 II

호주

캐나다

중국

인도

일본

대한민국

미국